

2022년 하반기 영광군 자체감사결과 공개

□ 종합감사

○ 기간 및 범위

구분	감사기간	감사범위	비고
군서면	2022. 10. 17.~10. 20.	2019. 10월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감사팀장 등 7명

○ 중점 감사사항

- 세출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실태 및 민원서류 처리 적정성 여부
- 각종 사업 설계 및 공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

○ 감사결과

구분	총 지적건수(건)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
	계	행정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추급	기타	
군서면	21	17	4	21	6	15	2,203	1,739	464	-	-	훈계1 주의35

□ 기동감사

○ 기간 및 대상: 2022. 12. 12.~12. 16./ 3건 7,126백만원(실과소 3건)

○ 감찰반: 3명(군 2, 명예감사관 1)

○ 중점 감찰내용

-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여건 부합 여부
- 품질관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7건(시정 7)
- 재정상 조치: 4건, 68,924천 원(감액)

I 군서면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① 당직근무 및 청사방호 소홀

- 「영광군 당직근무 규정」 제14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2항에 따르면 당직반장은 당직신고를 한 후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부책 및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 이를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당직편성)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경우에는 당직반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8조(당직일지)에는 당직 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은 당직 책임자가 이를 당직일지에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광군 당직근무 규정」 제3조(당직구분)에 따르면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③ 숙직은 매일 두고 그 근무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 ④ 당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및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한 경우,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강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숙직근무자로 지정된 자는 일과시간 종료 후 1시간 상황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재택숙직근무자로 지정된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정 제12조(당직원의 임무)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호 무인전자 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서면에서는 당직근무일지 작성관리 소홀 및 당직상황 보고를 소홀히 하고 일직근무자가 경비장치 세트를 하지 않아 청사방호 관리에 소홀했음.

⇒ 당직근무 철저 및 청사방호를 위한 전직원 교육실시 지도.(주의 조치)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미처리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청구금액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의 경우 1.5%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별표 2의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는 지역개발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임차료(202-01) 외 2건의 통계목 예산에서 장비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지역개발공채 5건 / 354,000원(공급가액기준 요율 적용)을 대금 청구 시 각각 업체에서 매입·제출 받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관련 지역개발공채가 미 첨부 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미징구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 징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③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반보상금(301)공통사항을 보면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①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②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③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4를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203-01)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군서면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건 / 8,823,000원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통계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찬교육 실시 및 감독 철저 지도.(주의 조치)

④ 1천만원 초과 계약문서 수입인지 관리 소홀

-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8조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천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70천원의 수입인지를 과세 문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또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공사계약(10,000천원 이상) 체결 시 계약업체로부터 징구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01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 소인처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방법)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징구 첨부된 수입인지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전자 소인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인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⑤ 분할계약 금지 위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 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

장제1절제5호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 하고 일괄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군서면은 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계약시 공사내용·발주시기·장소가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로 일반입찰에 의한 발주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분할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훈계)

⑥ 공유재산 관리 소홀

- 각 읍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분이 업무를 영광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군서면 남죽리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재무과 관리 소관의 공유지에 대해 대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군서면에서는 재산관리관이 건설과로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 3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무단점유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 변상금 464,440원을 부과하여 회수조치 하고,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주의 조치)

⑦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 소홀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비가 포함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도비가 포함된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군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공동급식비’ 등 개소당 연간 약 5,28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임.
-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로당 운영 안내」등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며,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지출한 경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고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같은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연 2차례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구입에 대하여 비품관리대장 또는 정산서 서식에 의한 중요재산 증간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29개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공동부식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연 2차례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비품구입 및 수리·수선·소규모 공사건에 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설치사진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였으며, 냉·난방비를 일괄지급하는 경우,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의 많은 양의 구입 지출한 경우가 있음에도 정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처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 「2022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매뉴얼」을 연찬하여 원본의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자인 경로당 대표 및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합법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기하도록 지도.(시정 조치)

⑧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게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수급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타인의 급여관리를 원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관리·사용능력을 확인하여 본인관리확인

서를 징구하여야 함.

- 군서면에서는 수감기간 현재 정신·발달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 급여관리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또는 본인관리확인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급여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 급여관리자에 대하여는 영수증 및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관리 하였으나 급여관리 실태점검에 대하여 팀장이상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자에 대하여도 급여관리실태 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관리 지정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및 본인관리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실태 점검표를 통한 하반기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⑨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배부 관리 미흡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장(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목욕이용권을 주민등록법 기준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 월 2매를 매년 1월과 7월 10일에 6개월분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목욕권 지급 상황을 수불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군서면에서는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배부시 2020년 연령도래자(1950년생) 43명 중 7명, 2021년 연령도래자(1951년생) 27명 중 4명, 2022년 연령도래자(1952년생) 27명 중 1명에 대하여 신청서를 미제출하였으나 목욕이용권을 배부한 사실이 있음.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업무담당은 미 징구된 12건의 신청서에 대하여 보완하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시정 조치)

⑩ 농작물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작성 소홀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농어업재해 발생시 재난 지원금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그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농가 및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함.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시행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서명 날인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 군서면에서는 2020~2022년도 농업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면장이나 이장 등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고 경작농지, 임차농지를 기재하지 않는 등 농가별 농업 피해 조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함.

⇒ 농업피해 조사 대장 작성방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⑪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준공검사 소홀

- 유통축산과-896(2020. 1. 3)호, 유통축산과-3612(2021. 1. 29)호, 농업유통과-580(2022. 1. 12)호와 관련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지침서에서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 서류와 현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읍면 심의회를 거쳐 군에 추천하고 군에서는 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 읍면에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에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읍면에서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음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추진 완료 후 지침 상 명시한 보조사업자나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 준공계 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토록 하고 있음
- 군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2020~2022년까지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추진에 있어 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 준공계 등을 검토 과정중 준공검사 업무 처리에 있어 현장에서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하여야 하나 현장출장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만으로 준공처리 하는 등 준공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주의 조치)

⑫ 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받직불금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 신청자인 농업인이 받직불금 신청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밭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활용 여부 등 충족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나 실제 재배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으로 확인된 현장 점검결과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 전송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 재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조치하여야 함.
- 군서면에서는 밭농사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을 사전조사하지 아니하고 밭농업 직불금으로 10농가 335,750원을 부당하게 지급 하였음.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335,750원을 회수하고, 법령 근거 및 업무지침에 따라 직불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주의 조치)

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소홀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관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이라는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군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 64건에 대하여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징구하여 부당한 민원 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 되고 있는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지도(주의 조치)

⑭ ㉘㉘리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군서면에서는 ㉘㉘리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사토량 27 m³(운반거리 3k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사토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14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사토처리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된 141천원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고,
-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주의 조치)

⑮ △△리 △△△ 개거공사 추진 소홀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단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내용 중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처리비가 포함된 단가임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단가를 적용하여 내역을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적용하지 말아야 함.
- 그런데 군서면에서는 △△리 △△△ 개거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 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면서 토목공사 원가계산 체비율을 계상하여 적용하였고, 대가 지급 시 이에 대한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경비가 포함됨으로써 238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경비 238천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주의 조치)

⑩ 리 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군서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을 요청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리 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가림막휨스’로 집행하였는데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232천원의 안전관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청구내용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과다집행된 안전관리비 232천원을 회수조치하시고,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주의 조치)

⑰ 리 마을 사면 정비공사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작업여건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리 마을 사면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옹벽 시공 시 벽체 스페이스를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준공사진 확인결과 벽체 스페이스

54㎡을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경비 포함 33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설계변경에 대한 감액없이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과다집행된 공사비 339천원을 회수조치하시고,
-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주의 조치)

II 기동감찰(부실공사 방지)

① [X][X][X][X][X] 정비사업

1)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X][X][X][X][X] 정비사업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틀 설치, 스페이스(벽체용) 설치 등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기동감사 당일 까지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59,600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X][X][X][X][X] 정비사업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식료품 구입, 안전간판' 으로 집행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342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62,942천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도록 하였으며,
-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시정 조치)

② [X][X][X][X][X] 개설사업

1)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 [X][X][X][X][X] 개설사업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흙깎기(보통, 연암) 및 측구터파기(보통, 연암)가 반영되어 있으나 흙깎기 및 측구터파기 임반 종류가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이 상이함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5,054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2)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 서류 확인 미흡

- **○○○○** 개설사업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공사감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 15가지의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검측대장, 공사감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5,054천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도록 처분하였으며,
-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 서류 확인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시정 조치)

③ **○○○○** **○○○○** 정비공사

1)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

- **○○○○** **○○○○** 확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기준틀 설치(21EA)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기동감사 당일 까지 기준틀 일부(10EA)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928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2)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서류 확인 미흡

- **○○○○** **○○○○** 확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공사감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 15가지의 서류를 검토확인 하여야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검측대장, 공사감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이 미비하여 주요 공정이 설계 및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3) 공사용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처리 소홀

- **○○○○** **○○○○** 확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사결과 현장사무실 용도의 공사용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3m×6m)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 등 공사용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928천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도록 처분하였으며,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도록 조치함.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및 시공자 비치 서류 확인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시정 조치)

팀장 민원도우미제도 운영

□ 필요성

-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담당자를 찾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민원업무 처리를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음
- 민원안내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연중
- 사업내용
 -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들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하여 면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로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접종 관련 인증 및 발열체크, 민원처리 절차 및 담당자 안내, 민원상담 등을 실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외국인 민원인들은 해당 팀으로 동행하여 안내하며, 사회배려대상자들의 민원은 우선처리 지원
 - 노약자 문맹인, 장애인, 다문화인 민원신청서를 낭독하여 이해시킨 후 작성 및 대필 지원
- 사업비: 비예산

□ 기대효과

- 민원도우미제도 운영으로 모든 면민들에게 차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서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더욱더 만족하여 돌아갈 수 있음

□ 관련사진



팀장민원도우미



팀장민원도우미



군서면 민원도우미 명찰

칭찬합니다

홈 > 열린군정 > 참여대행 > 칭찬합니다

제목 군서면 사무소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작성일 2022-07-20

오전에 군서면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직원들 모두가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모습, 다른민원인한테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모습등이 보기좋아서 칭찬합니다에 글을 올립니다. 군서면사무소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

군 홈페이지 내 '칭찬합니다' 게시글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건강반찬 지원사업

□ 필요성

- 홀로사는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 음식조리의 어려움 등으로 기본적인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찬지원에 대한 욕구가 큼
- 건강반찬의 정기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4. 1 ~ 10. 31.(7개월 기간중, 27회)
- 사업내용
 - 대상자 : 12명(홀로사는 취약계층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 * 1순위 홀로사는 남자 어르신, 부자가정, 중장년 남성 독거 가구
 - 2순위 장애인
 - 3순위 기타 반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지원 일 : 기간 중 매주 수요일
 - 내 용 : 매주 반찬 4종 (국·찌개 1종, 반찬 3종)
 - 계절음식 추가 지원
 - * 여름(7~8월) : 삼계탕
 - * 가을(9월) : 오곡밥
- 반찬제조 : 콩밭메는 두부공동체 회원 자원봉사
- 사업비: 300만 원 /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 기대효과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식생활 생활
- 건강반찬 지원으로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삶 지원

□ 관련사진



다회용기 사용



보온보냉백 사용



전달사진



반찬제공



반찬 제공



반찬제공



삼계탕 나눔



가을밥상 나눔

이웃사랑 소리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웃사랑 소리함’ 운영
- 사업기간 : ‘22. 2. 1 ~ 12. 31.(11개월)
- 사업내용
 - 생활관리사, 이장, 요양보호사 등 공적인력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의 사연 접수
 - 사연 확인 후 방문상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 운영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 사연접수
 - 전화, 방문, 소리함에 사연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연 접수
- 현장확인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사연내용 확인
- 서비스 연계
 - 사연에 맞는 서비스 연계
예시)
 -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해요 ⇒ 긴급지원 의료비 등 기타 의료비 지원
 - 오래된 주택이라 샷슈문이 틀어져 칼바람이 들어와요 ⇒ 샷슈 교체 등
 - 날씨가 너무 추운데 기름이 없어요 ⇒ 유류비 지원
- 사업비: 비예산(서비스연계 - 우리동네복지기동대 1700만 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640만 원 등)

□ 기대효과 및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로 위기상황 해소, 17건 서비스 연계

□ 사진대지



이웃사랑 소리함 설치운영



사연접수자 집수리 지원



사연접수자 반찬 지원 연계



사연접수자 후원물품 연계지원



사연접수자 복지기동대를 통한 쓰레기 수거



사연접수자 방문 건강상담